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0. 20, 법률 제17529호)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자료작성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제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신설(안 제1조의3)

- 1)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자료제출의무 면제근거를 마련함

2)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관련 시장현황,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현황 및 관리노력, 분쟁관련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조사중지절차 마련(안 제1조의4)

- 분쟁조정과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정조사 중지사유 추가하고, 실태조사 범위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시정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행위, 시정권고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원본증명기관의 규제 재검토 기간 확대(안 제5조의2)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키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 범위 등) ① 특허청장은 매년 1회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의4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③ 법 제2조4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시장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현황 및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 피해구제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검사의 개시 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조의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이유 및 내용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정권고”를 각각 “시정권고 및 공표”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3(실태조사 범위 등) ①</u> <u>특허청장은 매년 1회 법 제2조</u> <u>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u> <u>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u> <u>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u> <u>사를 할 수 있다.</u> <u>② 법 제2조의4제2항에서 “기업</u> <u>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u> <u>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를 말한다.</u> <u>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u> <u>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u> <u>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u> <u>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u> <u>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u> <u>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u> <u>있는 경우</u> <u>③ 법 제2조4제3항에 따른 실태</u> <u>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u> <u>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시장</u>

제1조의3(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현황 및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 피해구제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의3(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의 의사를

1. ~ 3. (생략)
제1조의4 (생략)
<신설>

고려하여 조사·검사의 개시 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조의5 (현행 제1조의4와 같음)
제2조의2(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이유 및 내용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

시정권고 및 공표-----

--.

② -----
시정권고 및 공표-----

-----.

③ ----- 시정권고 및 공표-----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u>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u>5년마다(매 5년</u> ----- ----- ----- ----- -----.
1.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u>2015년 1월 1일</u>	1. ----- ----- <u>2021년 1월 1일</u>
2. 삭제	
3.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u>2015년 1월 1일</u>	3. ----- ----- -- <u>2021년 1월 1일</u>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842